

「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p>제14조(직권시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<u>관세청 소관부서에</u> 직권시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그 승인을 받은 때에 직권시정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<u>관세청 소관부서의</u> 장은 제2항의 직권시정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시정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을</p>	<p>제14조(직권시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</u>----- ----- 이 경우 <u>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세청 소관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규제개혁법무담당관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처분청이 자체판단으로 직권시정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<u>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관부서 의견 조회를 의무화</u>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요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----- .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8조(취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<u>처분청에 우편, FAX,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8조(취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취하서를 처분청에 우편,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<p>○ 취하서 양식 신설에 따른 문구 정리</p>
<p>제23조(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“재조사” 결정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재조사의 범위를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, 가능한 한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“재조사” 결정에 따른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~ ⑨ (생략)</p>	<p>제23조(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삭제></p> <p>⑤ ~ ⑧ (현행 제6항 ~ 제9항과 같음)</p>	<p>○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절차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에 따라 삭제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<신설></p>	<p><u>제23조의2(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) ①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재조사하고, 그 결과에 취소·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영 제13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조사 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본청 해당 업무국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처분청은 영 제13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조사를 중지한 사유 및 기간을 본청</u></p>	<p>○ 재조사 결정 건에 대해 재조사기간(60일)을 정당한 이유 없이 초과하거나 재조사기간 연장 또는 중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마련</p> <p>< 감사원 지적 사항 반영 >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<u>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품목분류·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전상정,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, 품목분류·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, 동종·동류 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기간 내에 재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<u>3.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,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, 생산자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⑤ 처분청은 제4항에 따른 재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재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처분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기간을 연장,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기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청구인은 영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</u>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	<p><u>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처분청에게 재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처분청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와 관련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「기업심사운영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
<p><u>제46조(경정·고지절차의 이행) ① ~ ② (생략)</u> <u><신설></u></p>	<p><u>제46조(경정·고지절차 등의 이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③ 통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에 대한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○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해 결정 전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</p>
<p><u>제56조(재검토기한)</u>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</p>	<p><u>제56조(재검토기한)</u> ----- ----- -----<u>2020년 1월 1일</u>----- ----- <u>6월 30일</u>----- -----</p>	<p>○ 재검토 기준일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치를 하여야 한다	-----	
<부 칙>	부칙<관세청 고시 제2019-033호(2019. 8. 9.)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	○ 부칙 신설
[별지 제3호서식] 직권시정 검토조사서 소관 부서 검토 의견	[별지 제3호서식] 직권시정 검토조사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-----	○ 처분청의 자체판단이 곤란한 직권시정은 불복전담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승인부서 변경
[별지 제19호서식] 서약서 1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<단서 신설>	[별지 제19호서식] 서약서 1. ----- --(다만,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)	○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의 경우 「부패방지법」 나 「공익신고법」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 < 법제처 개선의견 반영 >
<신 설>	[별지 제20호서식] 취하서	○ 취하서 양식 신설
<신 설>	[별지 제21호서식] 재조사 연장 통지서	○ 재조사 연장 통지서 양식 신설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신 설>	<u>[별지 제22호서식] 재조사 중지 통지서</u>	○ 재조사 중지 통지서 양식 신설
<신 설>	<u>[별지 제23호서식] 재조사 재개 통지서</u>	○ 재조사 재개 통지서 양식 신설
<신 설>	<u>[별지 제24호서식] 재조사 연기신청서</u>	○ 재조사 연기신청서 양식 신설
<신 설>	<u>[별지 제25호서식] 재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</u>	○ 재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양식 신설

직권시정 검토조사서

청 구 인	상호(법인명)			
	성명(대표자)			
	주 소			
사건 번호		청구 세액		
과세 개요				
관련 예규 결정례 판례				
검토 의견				
수행자 및 확인자		세관 과	수행자 주무 과장 국장(세관장)	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
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의견				

서 약 서

※ 관련 : 「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
「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」 - 2.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·책임성 강화

직위 : ○○○○○○○○ 심의위원

성명 :

상기 본인은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(다만,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)
- 2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6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7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8.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과세전적부심사청구(□)	취 하 서
이의신청(□)	
심사청구(□)	

사건번호 :

청구(법)인 :

대리인 :

「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(법)인은 청구의 전부(일부)를 취하합니다.

취하(일부)내용 :

201

청구(법)인 (날인 또는 서명)
(연락처)

대리인 (날인 또는 서명)
(연락처)

○○세관장 // 관세청장

1.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2. 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취하에 대한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.

재조사 연장 통지서

납세자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
	③ 상 호		④ 사업자등록번호	
	⑤ 주소 또는 영업소			

통 지 내 용

⑥ 재조사기간	부 터	까 지
⑦ 재조사연장기간	부 터	까 지
⑧ 연 장 사 유		

위와 같은 사유로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재조사기간 동안 재조사를 연장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

직인

귀 하

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○○과 ○○○(전화: ~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재조사 중지 통지서

납세자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
	③ 상 호		④ 사업자등록번호	
	⑤ 주소 또는 영업소			

통 지 내 용

⑧ 재조사기간	부 터	까 지
⑨ 재조사중지기간	부 터	까 지
⑩ 중지사유		

위와 같은 사유로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중지기간 동안 재조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. 위 재조사중지 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재조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

직인

귀 하

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○○과 ○○○(전화: ~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재조사 재개 통지서

납세자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
	③ 상 호		④ 사업자등록번호	
	⑤ 주소 또는 영업소			

통 지 내 용

⑧ 당초재조사기간	부 터	까 지 (일)
⑨ 재조사중지기간	부 터	까 지 (일)
⑩ 재조사재개일자		
⑫ 잔여재조사기간	부 터	까 지 (일)

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3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중지하였던 재조사를 위와 같이 실시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

직인

귀 하

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○○과 ○○○(전화: ~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재조사 연기신청서

신청인	① 상 호 (법 인 명)		② 성 명 (대 표 자)	
	③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④ 사업 자 등 록 번 호	
	⑤ 주 소 (사업장)			
신청 내용	⑥ 당 초 재 조 사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⑦ 연 기 신 청 사 유	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40조제1항제 ____호		
	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<p>「관세법」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 세 관 장 귀하</p>				
<p>※ 구비서류 :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</p>				

재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

신청인	① 상 호 (법 인 명)		② 성 명 (대 표 자)	
	③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④ 사업 자 등 록 번 호	
	⑤ 주 소 (사업장)			
신청 내용	⑥ 당 초 재 조 사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⑦ 연 기 신 청 사 유			
	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연기 여부	⑨ 연 기 여 부	(가) , (부)		
	⑩ 연 기 된 재 조 사 기 간			
	⑪ 사 유			

귀하께서 신청하신 재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세관장

직인

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○○과 ○○○(전화: ~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